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첨부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대상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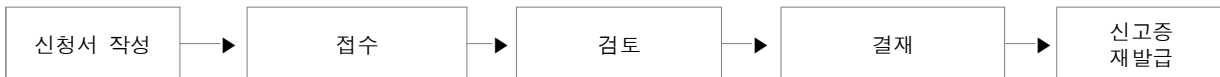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000원	5,300원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영업신고증교부 담당부서)